

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적용 가이드라인(안)

□ 특구육성사업 기술료 감면 적용 가이드라인(안)

①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특구육성사업(기술이전사업화 사업) 과제 종료 후 정부 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청자격) 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실시계약 체결(납부계획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채용한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유예 신청서, 납부계획서, 보증수단* 및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보증수단 : 납부유예 기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평가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보증수단을 의미

** 납부유예신청서 등 관련 제출 서식 ‘붙임’문서 참고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인력 신규 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처리절차



② 감면기준 및 방법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 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하며, 정부의 다른 사업과의 고용 감면 중복은 인정되지 않음
-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을 적용
-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유예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예 기간종료 또는 사유소멸 사실을 대해 전문기관에 통보**
 - ① **(이행 시)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전문기관은 고용 유지 현황을 확인하고 최초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 감면한 금액을 실시기관에 통보**
 - 실시기관은 감면된 기술료에 대한 기술실시 재계약(납부계획서 수정 제출) 체결 실시 (☞기존 기술료 납부방식과 동일하게 추진)

<기술료 납부방식별 감면방법>

- 정액기술료 : 최종 감면된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
- 경상기술료 : 감면된 최종 정부납부기술료 누적징수액을 확정하고, 잔여 유예 기간(3년) 종료 후 잔여기술료 납부

- ②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해고 등으로 인해 유예 사유가 소멸 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통보(기술료 감면 없음)**
 - 당초 확정 통보된 기술료에 대한 기술실시 재계약 체결

<감면 후 기술료 산정 방법>

- 연봉산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세전 급여
 - * 1년 미도래시 월별 급여증빙(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 감면적용 : 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착수기본료 포함)
 - (정액기술료) 기술료 감면 적용 후 잔여기술료에 대한 일시 또는 조기납부, 혁신성과에 대한 감경율 적용 가능
 - (경상기술료) 기술료 감면 적용 후 잔여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 실적에 따른 매출정률기술료로 차감
- * 착수기본료 및 경상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5년 유예, 납부 유예 종료일이 속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유예되었던 보고서를 일괄 제출하고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산출식

정액기술료	☞ 정부납부기술료 최종액 $= (\text{정부납부대상기술료} - \text{고용연계감면액}) \times (100\% - \text{일시 또는 조기납부, 혁신성과에 대한 감경율})$
경상기술료	☞ 경상기술료 누적 징수한도(착수기본료 포함) $= \{(\text{실시기업의 정부출연금 사용액}) \times (\text{기업규모별 징수 한도율(중소기업 : 12\%, 중견기업 : 24\%)})\} - \text{고용연계감면액}$

<기술료 감면 불인정 사례>

- 사유소멸 : 실시기업 또는 채용인력의 사정으로 고용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 중복지원 : 동일과제 또는 타 정부사업에서 해당 청년인력이 인건비 지원 또는 기술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보고 : 신규 채용 인력의 고용 관련 허위 자료 제출
- 미제출 : 기술료 감면 관련 서류 미제출
- * 고용취소, 중복지원, 허위보고 등에 따라 감면 사유가 소멸되는 날 기준으로 감경율 적용

③ Q & A

○ 신규 채용한 청년인력이 도중에 자의에 의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타의에 상관없이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하게 되면, 기술료 감면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유소멸 사실을 통보하고,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기술료 감면 없음)

○ 신규 채용 인력이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정액기술료 일시 또는 조기 납부, 혁신성과에 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감경이 가능합니다. 기술료 징수에 대한 기준일은 해당 청년 인력의 고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기술 실시 재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계획서 제출시 일시납부, 분할납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이후에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있나요?

☞ 기술료 납부방식(정액/경상)은 청년인력 고용 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 제출시 필수로 선택한 사항으로, 납부유예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경상기술료를 선택하고 고용유지 2년을 달성하였을 경우, 잔여기술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실적에 따른 '매출정률기술료'로 구분됩니다. 채용인력의 연봉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률기술료를 차감하여 기술료가 산정됩니다.

○ 기술료 감면 신청을 하더라도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은 경상기술료 보고서 제출도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회계연도 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일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1]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청년고용 연계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실시기업명		실시기업 대표자	

(1) 신규인력 채용 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전공	최종학위

(2) 신규인력 활용 계획

항목	내용
해당인력 수행직무 (근무분야)	신규인력의 근무분야 및 직무내용,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신규인력 활용계획	향후 기술개발 업무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인력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	신규인력 장기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 등 기업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 2] 고용연계 성실이행 확인서

고용연계 성실이행 확인서
(청년고용 연계형)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연구기관명	
실시기업명		실시기업 대표자	

신규인력 채용 현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전공	최종학위

위 과제와 관련하여 고용연계 성실이행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타 정부과제에서 해당 고용분에 대해 이미 기술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용연계에 따른 기술료 감면율을 적용받지 않고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징수 절차대로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업 : (기관명)

대표자 : (인)

(전문기관명) 이사장 귀하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기술료 납부 계획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중사업명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세부사업명	'00년 기술이전사업화사업 (기술이전 / 연구소기업 / 투자연계형)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연구성과활용 현황	성과활용명					
	성과활용일			성과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실시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번 호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산정내역	<input type="checkbox"/> (정액) 정부출연금의 00%(중소 : 10% / 중견 : 20%) <input type="checkbox"/> (경상)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0%(중소 : 1% / 중견 : 3%) 경상기술료 : 사업수행결과 매출액의 0%(중소 : 1% / 중견 : 3%)					
기 술 료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의 경우 착수기본료)			기타 조건		
	납부 예정일	납부 금액		1. 청년인력 고용을 활용계획에 맞추어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에서 감경 2. 청년인력 고용을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감경 없음 3. 납부 유예 기간만료 및 사유소 멸시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계						
기타특기사항	청년 인력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 1부.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 3. 중소기업,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실시기관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4. 납부 유예기간에 대한 보증서류(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등) 1부.						
년 월 일						
실시기관 :						
(인)						